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삼성전자증소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2월 11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금융투자상품 명시)	가.~마. (생략) 바. <신설>	가.~마. (현행과 동일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2022.02.11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p>	<p>-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신설></p> <p>주1~주5 (생략)</p> <p>주6)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유사한 전략의 다른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	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* 직전 회계연도 : 2020.12.07 ~ 2021.12.06</p> <p>주1~주5 (현행과 동일)</p> <p>주6) Class C-P, A-G, C-G, S, S-P 및 S-P2의 경우 미설정된 클래스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운용중인 타 클래스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~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Class C-P, C-Pe 및 S-P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납입요건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- 세액공제(2014.1.1 이후 납입액 부터 적용):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~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Class C-P, C-Pe 및 S-P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납입요건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</p>

	<p>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S-P2 가입자 - 세액공제(2015.1.1 부터) :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.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</p>	<p>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S-P2 가입자 - 세액공제 :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)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)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</p>
--	---	--

		<p>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</p> <p>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</p>	<p>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--	--	--	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
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	<p>-</p> <p>- 회사 연혁 추가</p> <p>- 자본금: <u>260.5억</u></p>	<p>- 2022.01.19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- 회사 연혁: <u>2021.05 자본금 증자 (+156.25억)</u></p> <p>- 자본금: <u>416.75억</u></p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

<끝>.